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사하구 행정기구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조정·정비하고 소관 업무와 적합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2조, 제3조제2항제3호)
- 나.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조정·정비(안 제3조제2항제2호·제3호)
(동사무소 소관에 관련된 사항 삭제,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업무 조정)
- 다. 특별위원회 명칭·기능 정비(안 제7조제3항, 제8조 제1항)
- 라.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 의결 보완(안 제6조 제5항 신설)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의2
- 나.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- 다.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
4. 검토의견

상기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하구의 행정기구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구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그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조정·정비 하는 내용으로

- 2006. 7. 1 시행되는 사하구 직제개편 내용을 보면 기존 사회산업국 소관 중 교통행정 업무를 제외한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경제, 환경위생, 청소행정업무를 「주민생활지원국」으로 하고 「도시국」은 명칭변경 없이 기존 소관업무에 교통행정업무를 추가 흡수·조정 하였음
- 따라서 우리구의회 기존 「사회도시위원회」를 「도시위원회」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관련된 사항을 직무와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-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장·부의장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할시 의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용하여 별도 조항을 추가 신설, 상임위원장도 직무와 관련 태만하거나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「윤리특별위원회」와는 별도의 성질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됨
- 그외 2006 4 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「장계자격특별위원회」를 「윤리특별위원회」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사항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회 등에서는 일찍이 제도화된 내용으로서 이번 회기에 개정코자함